

94. 6. 11

입양아 큰뒤 출신자료 알권리

양부모 연령등 자격강화 규정...“국외입양 중단 재고”의견

안중주 기자

입양특례법 개정 시안 정책토론회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우리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입양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10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사부의 용역 의뢰로 보사연이 마련한 입양특례법 개정시안이 발표됐으며, 이를 놓고 보사부, 법원행정처 등 정부 관계자와 언론계·학계·법조계·연구기관·입양기관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입양특례법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시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토론회에서 입양특례법 개정의 방향과 시안을 발표한 보사연의 장기원 연구위원은 해마다 발생하는 3천명 가량의 입양대상 어린이를 모두 국내 입양시키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96년부터 국외 입양을 전면 중단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사연의 입양특례법 개정 시안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주요 방안의 하나로 입양 어린이를 지금처럼 양자가 아닌 친자라도 호적에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양 어린이가 나중에 성인이 된 뒤 자신의 출신과 관련된 자료를 입양기관에 요청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반드시 내주도록 입양 어린이의 알권리 조항을 새로 마련했다.

이 시안은 양친자를 확대 또는 유기하거나 양친자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양부모나 입양기관장이 가정법원에 양친자 관계의 파기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새

로 넣었다.

이 시안은 또 입양 가정에 대해 △일정 비율로 국민주택 분양·임대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양육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시안은 양부모 자격요건을 좀더 엄격히해, 부부로서 △양부모 중 적어도 한쪽이 25살 이상이고 △양친자를 부양할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부부 사이가 화목하고 정신·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한다고 명시해놓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입양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한 경남대 배대순 교수(사회복지학)는 그동안 국내 입양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입양기관으로 인가받지 않은 병·의원, 조산소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개인입양이

가능했고 입양기관들의 폐쇄적인 입양처리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쉽게 자녀를 호적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인우보증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배 교수는 또 국내입양 전문기관에 대한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과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처지의 어린이를 위해 친가정을 대신 만들어주는 이른바 가정위탁보호제도를 전국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입양특례법은 지난 76년 국외입양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61년 제정된 '고아입양 특례법'을 없애고 만든 것으로, 그동안 전면개정의 필요성이 학계는 물론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제기돼왔다.

보사부는 이날 보사연이 마련한 개정시안을 토대로 각계 대표들이 제시한 의견을 모아 반영한뒤 초종개정안을 오는 8월까지 만들어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